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미단시티 공동8BL)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5 - 147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07.)로 부터 3년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18.(수)	2026.07.01.(수)	2026.07.06.(월)	2026.07.09.(목)	2026.07.11.(토) ~ 2026.07.13.(월)	2026.07.16.(목)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금회 공급하는 주택형(약식표기 84B) 외 다른 주택형의 잔여세대에 관한 사항은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 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 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0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5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8.(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6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084.9673)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7.06.(월)	2026.07.09.(목)	2026.07.11.(토) ~ 2026.07.13.(월)	2026.07.16.(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 102동 2801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4.07.)로부터 적용 및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적용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거주의무기간	3년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29층 11개동 총 1,096세대 중 일반분양 253세대 중 잔여 3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7월 예정(잔금완납시 입주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면적 (지분)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동	호
2026910156	01	084.9673	84B	84.9673	24.8629	109.8302	38.9321	148.7624	71.3483	1	101	2403
										1	109	2704
										1	110	2803

■ **공급금액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VAT 없음)

주택형	약식표기 (타입)	동호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1차(5%)	2차(5%)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금 1차 납입 후 30일 이내	계약금 1차 납입 후 60일 이내
084.9673	84B	101동 2403호	1	109,438,000	332,562,000	442,000,000	22,100,000	22,100,000	397,800,000
		109동 2704호	1						
		110동 2803호	1						

■ 공통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은 2023년 10월 준공을 완료한 후, 임대 미 입주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 **또한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시너지밸류제2호,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여 준공 후 공급하는 것으로 청약 신청시 확인하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청약 신청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산출하였으며,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 선수관리비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합계비율에 따라 배분이 완료되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 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형별로 진행되며, 준공 후 분양이므로 계약자가 사전에 커뮤니티 분양사무실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1차(공급금액의 **5%**), 계약금 2차(공급금액의 **5%**), 잔금(공급금액의 **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3.18.(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 일정은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상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시행위탁자의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대출알선이 불가 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자세한 대출에 대한 안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3.18.(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
청약신청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09.(목) ~ 2026.07.18.(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0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안내**

구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 전원	2026.07.11.(토) ~ 2026.07.13.(월) (10:00~16:30)	오션포레 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 102동 2801호)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자격 확인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O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에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청약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온라인 발급'인감증명서'사용 가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대리인 위임불가)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전체포함"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주택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O		위임장	청약자	• 오션포레베네스트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6.07.16.(목) (10:00~16:30)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 102동 2801호)**	**1555 - 1471**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에서 제출[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시행위탁자 측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381-1470-7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시행위탁자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분양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청약자	• 홈페이지 서식 참조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O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인지세납부)	본인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구매방법 및 금액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분양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분에 한함),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오션포레베네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1555-1471)** 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한도 확인).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시행위탁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발코니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B	거실+주방+침실+가족실+침실1	3,700,000	370,000	3,330,000	-

(1)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농협은행	301-0381-1470-7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502호 홍길동 → 1010502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세대별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음)

(2) 발코니 확장 공통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외기에 직접 면해있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모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 당 현장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완료된 상태로서 반드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해야 하며,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아파트 분양계약("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유의사항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위탁자" ㈜시너지밸류제2호,시공사 동원건설산업㈜ 및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분양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본 분양공고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매도인 담보책임, 소유권이전의무 등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시너지밸류제2호가 부담하고,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시너지밸류제2호가 책임부담 하기로 하며,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본 공고상 내용 외 분양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분양계약자(수분양자)는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포함) 및 종료(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의 사업주체(매도인) 지위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시너지밸류제2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됨에 분양계약자(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동의한다.**
- **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 원리금 상환 등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의 책임은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의 범위내로 한정되는바, 현금부족 시 분양계약자(수분양자)는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은 최우선하여 적용된다.**

11 기타 유의사항

■ **단지여건 등 전반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3.18.(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월 : **2026년 07월 예정**(잔금완납시 입주 가능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구분	내진능력 (MIMI등급)
내진등급 Ⅰ	Ⅶ-0.239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 7.0m	2.3m	주출입구 : 2.7m

-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차로 높이는 2.3m / 주차공간 유효높이는 2.1m 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고,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기산일은 2023.10.10.일 임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분양보증 : 본 주택은 2023.10.10. 사용승인 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주택임.**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통신·소방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식회사 세정이에프씨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2,806,330,000원	676,071,000원	1,463,000,000원

■ **사업관계자**

구분	상호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	(주) 시너지밸류제2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 110동 1층(운북동)	110111-7589819	620-81-59283
시행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타워)	110111-2867418	120-86-58362
시공사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512호(관양동, 대명글로벌비즈스퀘어)	131111-0330941	129-86-78894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커뮤니티센터 분양사무실** 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커뮤니티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667 102동 2801호
■ 홈페이지 : https://www.oceanforebenest.com
■ 문의전화 : 1555 - 1471

1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등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 여부	내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해당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9,473,372,99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16,730,949,150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 설비공사	278,662,447
		기간이자	5,534,528,612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78,662,447
		필요적경비	1,054,143,919			조적공사	589,115,921			가스설비공사	199,085,547
		그 밖의 비용	1,594,657,479			미장공사	692,137,929			자동제어 설비공사	59,682,740
		계	27,656,703,000			단열공사	925,867,931			특수설비공사	1,467,593,593
공사비	토목	토공사	1,135,863,871			방수, 방습공사	340,817,790			공조설비공사	385,230,822
		흙막이공사	-			목공사	806,504,807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741,863,065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1,209,423,500			정보통신공사	1,415,747,832
		옹벽공사	-			금속공사	280,879,074			소방설비공사	2,025,117,535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1,574,855			승강기공사	821,903,943
		우수,오수공사	403,502,360			창호공사	2,082,736,631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963,951,417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241,137,867			이 윤	1,118,642,935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67,250,393			타일공사	1,221,430,690		계		52,028,365,996
		도로포장공사	100,875,525			돌공사	1,550,570,159	간접비	설계비		6,175,00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3,625,131			도장공사	951,772,949		감리비		4,945,401,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874,912,590		일반분양시설경비		514,762,993
		조경공사	1,287,848,768			수장공사	2,196,467,103		분담금 및 부담비		3,119,872,115
		부대시설공사	67,250,393			주방용구공사	1,429,795,371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1,533,781,607			그 밖의 건축공사	67,632,918		기타사업성 경비		5,831,543,650
		가시설물공사	514,423,507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398,170,964		계		20,586,579,758
		지정 및 기초공사	328,162,546			급탕설비공사	597,113,343	그밖의 비용			6,256,351,246
		철공공사	-			오수, 배수설비공사	610,626,028	합계			106,528,000,000

※「주택법 시행령」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택지비 가산항목	기간이자	5,534,528,612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354,854,138
	제세공과금	1,054,143,919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2,708,396,631
	말뚝박기 공사비	242,542,691			에어컨냉매배관	932,626,609
	암석지반 공사비	418,609,151			기계환기설비	536,312,89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368,178,26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018,823,193
	택지와 관련된 경비	565,473,862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272,408,955
	소계(택지비 가산항목)	8,183,476,496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13,054,794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가산비		420,224,512
				소계(건축비 가산항목)		6,256,701,722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9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영종 미단시티 공동8BL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준공연도	:	20231009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6-8
층 수	:	지하1층 / 지상29층
연 면 적	:	167322.931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중림건축
공사시공자	:	동원건설산업(주)
공사감리자	: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인증번호 :	23-주-본-1-0089
평가자 :	노경환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33-09-19 까지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0 / 100 / 200 / 300 / 400 / 500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설계	75.6	에너지효율 높음 1+++ / 1++ / 1+ / 1 / 2 / 3 / 4 / 5 / 6 /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 56 / 64 / 72 CO_2 배출 많음	30.6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1.9	60.7	47.3	12.7
급탕	30.7	36.0	26.7	7.3
조명	13.0	12.8	35.1	6.0
환기		9.8	26.8	4.6
합계	75.6	119.3	135.9	30.6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 년 09 월 19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 축 물 명 :	영종 베네스트 위츠 골든마레
건 축 주 :	(주)무궁화신탁
준 공 (예 정) 일 :	2023.10.09.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6-8
층 수 :	지하1층, 지상29층
연 면 적 :	167,322.9310㎡ (평가 연면적: 161,988.9609㎡)
건 축 물 용 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중림건축
공 사 시 공 자 :	동원건설산업(주)
공 사 감 리 자 :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	G-SEED-C-2023-0791-5
인 증 기 관 :	한 국 부 동 산 원
유 효 기 간 :	2023.09.26. - 2028.09.25.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우수(그린2등급)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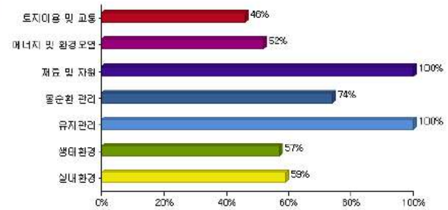

종합등급 ★ ★ ★ ☆

2023년 09월 26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주식회사 경일다모스
3. 대 지 위 치 : 인천 중구 운북동 1366-8
4. 성 능 등 급

가.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04월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